< 일 러 두 기 >

○ 법령명 : 식품 방사선 조사 처리 표준
○ 제정일 : 1999년 9월 29일
○ 최종개정일 : 2013년 8월 20일
○ 출처 : 대만 전국법규DB (방문일 : 2022년 1월 25일)

식품 방사선 조사 처리 표준

개정일: 2013년 8월 20일

제1조

본 표준은 식품 위생 관리법 제17조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한다.

제2조

식품 방사선 조사 처리조건은 다음과 같다:

제한사용 조사 식품 품목	제한사용 방사선선원	최고 방사선한계 에너지(MeV)	최고 조사선량 (kGy)	조사 목적
고구마, 감자, 샬롯, 양파, 마늘, 생강	전자	10	0.15	발아 억제
	X선 혹은 γ선	5		
파파야, 망고	전자	10	1.5	보관기한 연장; 병충해 방지
	X선 혹은 γ선	5		
딸기	전자	10	2.4	보관기한 연장
	X선 혹은 γ선	5		
콩류	전자	10	1	병충해 방지
	X선 혹은 γ선	5		
기타 신선한 채소	전자	10	1	보관기한 연장; 병원균 오염 제거
	X선 혹은 γ선	5		
곡류 및 가루제품	전자	10	1	병충해 방지
	X선 혹은 γ선	5		
신선·냉동 가금육 및 기계적 발골 가금육	전자	10	5	보관기한 연장; 병원균 오염 제거
	X선 혹은 γ선	5		
신선·냉장 가금육	전자	10	4.5	보관기한 연장; 선모충 생장 통제
	X선 혹은 γ선	5		
신선·냉동 가축육	전자	10	7	보관기한 연장; 선모충 생장 통제
	X선 혹은 γ선	5		
건조 혹은 탈수된 조미용 식물(바닐라, 종자, 향신료, 차, 채	전자	10	30	병충해 방지 및 살균
	X선 혹은 γ선	5		

소 조미료)				
화분	전자	10	8	보관기한 연장
	X선 혹은 γ선	5		
동물성 조미분말	전자	10	10	보관기한 연장
	X선 혹은 γ선	5		

제3조

본 표준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